

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<개정 2025. 12. 23.>

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·지정 기준(제3조 관련)

1. 공통기준

- 가. 설치·지정 기준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1개소마다 적용할 것
- 나. 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

2. 시설·설비기준

- 가. 사무실: 책상,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
- 나. 상담실: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,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
- 다. 프로그램실: 원예, 미술 등 치유 관련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을 갖추고, 프로그램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출 것
- 라. 신체치유실: 이용자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,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 구조를 갖출 것
- 마. 그 밖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기실(휴게공간),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

3. 인력기준

- 가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장은 1명으로 할 것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치유전문인력을 7명 이상 둘 것
 - 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
 - 2) 「간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간호사
 - 3)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의 물리치료사
 - 4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
 - 5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임상심리사(1급·2급)
 - 6)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
- 다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인력을 3명 이상 둘 것

4. 운영기준

가. 운영시간: 주 5일,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
나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광역 거점형 치유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것

1)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운영방침

2) 직원의 업무분장

3)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이용자의 대응요령

4)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이용수칙

5) 그 밖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

비고: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·지정·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

2. 이용 편의성

가.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

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정신의료기관 등 치유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·시설과의 연계 체계 구축 여부

3.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: 공동체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·신체적 증상의 치유·재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·상담·교육 등 적절한 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여부